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031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863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03102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6. 9. 28.

판결 선고 2016. 11. 4.

주문

1.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596,345원 및 그 중 1,453,260,556원에 대하여는 2015. 12. 24.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2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D 사이에 2015. 10. 8. 별지 2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하여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주식회사 A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F 접수 G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같은 목록 제9항 내지 제17항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하여 특허청 F 접수 H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같은 목록 제18 내지 제25항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F 접수 I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7,995,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107,995,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 D,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 4항 및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3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11. 21. 피고 주식회사 A(기존 상호인 '주식회사 J'에서 2015. 8. 4.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1	2014. 11. 21.	518,500,000원	2015. 11. 20.	610,000,000원
2	2014. 11. 21.	416,500,000원	2015. 11. 20.	490,000,000원
3	2014. 11. 21.	510,000,000원	2015. 11. 20.	60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변제한 돈, ②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④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이전 및 행사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⑤ 피고 회사가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5. 11. 2.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24.

중소기업은행에 1,453,260,5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합계 5,245,509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수위약금은 합계 2,090,280원이다.

다. 피고 B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매도

피고 B는 2015. 6. 1. 자신의 동생인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E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6. 5.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매도

피고 회사는 2015. 8. 12.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9. 3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

피고 회사는 2015. 10. 8. 피고 회사의 주주이던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특허권을, 같은 목록 제9항 내지 제17항 기재 각 디자인권을, 같은

목록 제18 내지 제25항 기재 각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위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G로,

위 각 디자인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H로, 위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I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10, 11, 12호증, 을나 1, 2, 3호증, 을마 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60,596,345원(= 대위변제금 1,453,260,556원 + 채권보전비용 5,245,509원 + 미수위약금 2,090,2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53,260,55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일로부터 1개월 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대상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위 구상채권은 위 각 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 회사의 자력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8, 14, 15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연수구청장,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인천 서구 K 공장용지 1,785.5m² 및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이하 'K 공장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가액은 1,450,000,000원이고(2015. 9. 30.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신고된 거래가액), K 공장부지 및 건물의 가액은 3,282,956,600원(2015. 12. 31.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평가액)인 사실, ③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40,000,000원이고(2015. 9. 30. 기준), 또한 K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829,054,725원인 사실(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청구금액), ④ 신용보증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합계 1,867,832,500원인 사실, ⑤ K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M가 2015. 11. 4. 청구금액 223,892,000원의 가압류를,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5. 12. 8. 청구금액 126,311,637원의 가압류를,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5. 12. 18. 청구금액

5,229,000,000원의 가압류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일반채권자들의 10여개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은 약 11,516,090,862원(= 1,240,000,000원 + 2,829,054,725원 + 1,867,832,500원 + 223,892,000원 + 126,311,637원 + 5,229,000,000원)을 초과하고,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의 처분가액은 4,732,956,600원(= 1,450,000,000원 + 3,282,956,600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의 정확한 평가액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 회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 B의 자력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천 연수구 N아파트 701동 1503호(이하 'N 아파트'라 한다), 인천 동구 O외 2필지 P상가 제에이동 제지하층 제비06호(이하 'Q동 점포'라 한다), 아산시 R건물 614호 중 1/120 지분(이하 'R건물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시가는 440,000,000원이고(2015. 6. 기준), N 아파트의 평균 시가는 180,000,000원이며(2016. 8. 기준), Q동 점포의 가액은 140,000,000원이고(2009. 7. 23.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신고된 거래가액), R건물 지분 시가는 2,000,000원(2016. 8.경 기준)인 사실, 그런데 신용보증사고 당시 피고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던 대출금 연대보증채무는 1,453,260,5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의 정확한 평가액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각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 B에게 각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C의,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의

수익자인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E의 각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 회사와는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이전에는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40,000,000원 및 주식회사 한국미용메디팜(이하 '한국미용메디팜'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70,000,000원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3) 갑 8호증, 을나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에서는 피고 C이 2015. 8. 12.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대금 1,450,000,000원에 매수하되 잔금은 2015. 8. 12.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설정된 담보대출금 채무 1,100,000,000원은 피고 C이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2015. 9. 30.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4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한 다음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68,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9. 3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이 2015. 10. 2. 피고 회사에게 4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한국미용메디팜으로부터 2015. 10. 28.에 7,700,000원을, 2015. 11. 30.에 7,7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에서는 그 매매대금을 1,45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1,10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에 같음하도록 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게 나머지 350,000,000원(1,450,000,000원 - 1,1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40,000,000원으로서, 피고 C이 2015. 9. 30.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100,000,000원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40,000,000원 합계 1,240,000,000원은 모두 위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은 사실상 위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한 채 2015. 9. 30.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피고 회사와 서로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회사가 그간 아무런 관계도 없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그로부터 현실로 지급받기로 한 350,00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단지 투자 목적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을나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지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6. 4. 4. 이를 S에게 매도하고 2016. 5. 2.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은 중개인 없이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는데,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하던 쌍방 당사자가 중개인 없이 거래가액이 1,450,000,000원에 이르고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의 인수까지 가져오는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한국미용메디팜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70,000,000원을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임차보증금채무 인수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을나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 C이 2015. 10. 2. 피고 회사에 송금한 40,000,000원 및 100,000,000원이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돈이 잔금이라 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회사에게 나머지 잔금 210,000,000원{1,450,000,000원 - (1,10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잔금 지급에 대한 최고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던 곳으로 그 명의만 피고 B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인데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 B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실제 명의를 회복한 것이고, 당시 피고 B에게 시세에 맞는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을마 1, 3, 4, 5, 8, 7, 9호증, 을마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피고 B, E의 아버지인 U의 소유였는데, U이 사망하자 2013.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9. 2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E은 2011. 3. 2.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과된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 2011년도 및 2012년도 도시가스요금, 2011년도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서는 피고 E이

2015. 6.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1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85,000,000원은 2015. 6. 5.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피고 E으로부터 2015. 6. 2.에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6. 5.에 잔금 385,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2015. 6. 2.자로 발행된 액면금 30,000,000원의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사본이 제출되어 있는 사실, 피고 E이 2015. 6. 5.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V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등 358,453,992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하여 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 E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협의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 B의 사업체인 V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관계로 자신을 비롯한 형제자매 5명이 피고 B으로부터 각 10,000,000원씩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피고 B 앞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 E, B과 그 형제자매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9. 이후부터는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E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라면 굳이 피고 B에게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그 진정명의를 회복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 E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것을 요청받았다. 만일 매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다는 말을 듣고 부득이 이를 매수하였다. 당시 배우자인 W의 지병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피고 B으로부터 먼저 매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2016. 6. 2.자 준비서면 2쪽), '자신이 2015. 6. 1.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피고 E) 앞으로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라고 자신이 먼저 피고 B에게

매도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여(2016. 9. 21.자 준비서면 3-4쪽),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마 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 E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E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피고 E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를 일부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 B에게 상당한 가격을 주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 E이 아니라 그의 형인 피고 B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마 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5. 6. 2.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남양주시 X블록의 아파트(이하 '남양주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경기도시공사에 계약금 32,779,2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남양주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무렵 굳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어야 할 특별한 동기 내지 경위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 E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 B이 V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2016. 6. 2.자 준비서면 3-4쪽)한 점에 비추어, 피고 E은 자신의 형인 피고 B의 사업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마 3호증의 1) 및 잔금 38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마 5호증)은 피고 B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액면금 30,000,000원의 국민은행의 자기앞수표 사본(을마 3호증의 2)의 기재 및 형상만으로는 위 수표가 피고 B에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는바, 달리 피고 E이 피고 B에게 실제로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3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2015. 6.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V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 등 358,453,992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사실상 피고 E은 위 피담보채무만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액은 440,000,000원으로, 피고 E은 시세보다 80,000,000원 정도(= 440,000,000원 - 358,453,992원) 저렴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 점, ⑥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중개인 없이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서 직접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마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갑 4, 8호증, 을마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9. 30. 해지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가액은 1,450,000,000원인 사실(원고는 피고 C이 2016. 4. 4.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S에게 1,55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가액이

1,5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매도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당시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24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채무가 1,453,260,55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은 210,000,000원(= 1,450,000,000원 - 1,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을 2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의 경우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 D은 주식회사 A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F 접수 G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같은 목록 제9항 내지 제17항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하여 특허청 F 접수 H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같은 목록 제18 내지 제25항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F 접수 I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 갑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Y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6. 5. 해지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465,000,000원인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57,004,9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채무가 1,453,260,55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107,995,008원(= 465,000,000원 - 357,004,992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107,995,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107,995,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한상

판사이상훈

별지